

공 고

◎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-17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21일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: 아래 대상자 내역 참조

3. 게재(게시) 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4. 의견제출 기한: 게재(게시)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별표9.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과태료 금액의 50%를 감경하며,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결정된 과태료 금액의 20%를 감경 합니다.

5. 의견제출 장소: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KCA부산본부 605호,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

【전화: 051-967-1205, FAX: 051-967-1208, E-mail: lchh2003@korea.kr】

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 내역

순번	대상자	주민등록번호	고지주소	위반법령	처분금액	광고전화번호	광고내용
1	황*식	610716-*****	구미시 신시로7길	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	750만원	010-7739-****	광고제안